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8,475,629	9,854,269
일반회계	311,953,829	9,358,615
특별회계	16,521,800	495,654
기타특별회계	16,521,800	495,65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78,747	26,362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914	3,02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74,254	59,228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683,160	110,495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97,035	11,911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19,365	9,581
항공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70,159	2,105
상수도특별회계	4,779,658	143,390
수질개선특별회계	85,606	2,56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31,238	123,937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50,547	1,516
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	51,117	1,5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49,44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